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95호 2019. 01. 04.(금)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544호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545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사천시 조례 제1546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595 호

사천시 조례 제154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老巨樹)”란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95 호

**제3조(실태조사)** 시장은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노거수 지정)** ① 시장은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노거수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 사 천 시 공 보

제595호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거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95 호

제9조(노거수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95 호

[별표 1]

## 노거수(규격)의 선정기준(제6조제1항과 관련)

수 종 명	추정수령 (년)	가슴높이둘레 (cm)	비고	
소 나 무	150	240	주목과 수목 준용	
곰 솔	150	270		
은 행 나 무	150	300		
향 나 무	150	130		
비 자 나 무	150	150		
가 시 나 무 (류)	100	230		
동 백 나 무	100	150		
느 티 나 무	200	360		
팽 나 무	200	330		
푸 조 나 무	150	300		
서 어 나 무	150	240		
이 팝 나 무	100	230		
말 채 나 무	100	230		
상 수 리 나 무	100	240		
굴 참 나 무	100	240		참나무류 준용
배 룡 나 무	150	140		
모 과 나 무	150	270		
감 나 무	150	180	유실수 준용	
음 나 무	100	210		
회 화 나 무	150	230		
주 엽 나 무	100	210		
뽕 나 무	100	150		
왕 버 들	150	330	버드나무류 준용	
벗 나 무 (류)	100	240		
멸 구 슬 나 무	100	210		
오 동 나 무	100	260		
참 죽 나 무	100	180		
철 쪽	100~150	100~120	진달래 준용	
만경수목(덩굴나무)	100~150	60~100	밑둥둘레	

주. 1. 기타 수목은 동일 성상(性狀), 과(科)·속(屬) 또는 성장속도가 유사한 수종 기준에 따라 선정.

2. 이미 노거수로 인식되어 있거나 체례의식이 존재하는 수목, 쌍립(雙立), 다립(多立),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기형목은 수령·규격에 상관없이 선정.

# 사 천 시 공 보

제 595 호

(별지 서식)

## 노 거 수 관 리 대 장

지 정 번 호		지 정 년 월일		구 분			
수종및본수		과 명		학 명			
소재지및위치		지 목		면 적	m <sup>2</sup>		
추정수령	년	수고	m	가슴높이 둘레	cm	수관 폭	m
소유자	주소			주소			
	성명 (전화)	( )		성명 (전화)	( )		
지정 이유							
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 사 천 시 공 보

제 595 호

사천시 조례 제154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  
집·보존·열람·대출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  
한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95호

제2조제1호 중 “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하 “영어도서관” ” 을  
“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이하 “도서관” ” 으로, “영어도서관” 을 “도  
서관”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어도서관” 을 “도서관” 으로 한다.  
제3조 중 “영어도서관” 을 “도서관”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어도서관” 을 “도서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어도서관” 을 “도서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년으로” 를 “5년 이내로”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어도서관” 을 “도서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를 “도서관 담당 부서장  
으로 하고” 로 한다.

제9조 중 “영어도서관” 을 각각 “도서관”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위촉한다” 를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관장” 을 “도서관  
업무담당 팀장” 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중 “영어도서관” 을 각각 “도서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영어도서관 예산 운영” 을 “그 밖에 도서관 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어도서관” 을 “도서관”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사람” 을 “사람 또는 책이음회원 중 14세 미만의 어  
린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권” 을 “5권” 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95호

별표1,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 【별표 3】

### 도서회원증(제19조제2항 관련)

<b>도서회원증</b>	
사진	성 명 : 회원번호 :
년   월   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 사 천 시 공 보

제595호

[별지 제1호서식]

## 도서관 사용(변경)신청서(제16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성명)	전화번호 (H P)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변경)내용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제16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 595 호

[별지 제2호서식]

##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회원번호	
주 소					연락처	(집번호) H.P
학교및 직장명					연락처	
세대주 성 명		회원과의 관계	(남, 여)	세대주 연락처	H.P	
<p>「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제19조에 따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귀하</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증명사진1매</li> <li>2.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li> <li>3. 대출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7일입니다.</li> </ol>						

# 사 천 시 공 보

제 595 호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소 사유					
환불 신청액	금	원정(금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p>「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귀하</p>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수강료 납부영수증				없음

----- 절 취 선 -----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성 명		생 년 월 일		남, 여
환불 결정액	원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 금 주	
<p>「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p>				

# 사 천 시 공 보

제 595 호

사천시 조례 제154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 【별표 1】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월 900,000원	월 200,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 595호

## 【별표 2】

###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의 원	월 1,844,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595호

## 【별표 3】

###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 ※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다.
3.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3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95호

## 【별표 4】

### 국외여비의 지급범위(제3조제3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 분	항공 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의장·부의장	1등석 정액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 준용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2등석 정액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 ※ 비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